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종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7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종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현기, 남궁역,
남창진, 윤종복, 이성배,
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
임춘대, 최민규, 허 · 훈,
황철규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전협상을 통한 민간개발 활성화로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상대상지 선정 시,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, 개발의 적정성, 기대·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함(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정합성, 개발의 적정성, 기대·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한다.
- ② 시장은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(생략)</p> <p>제9조(협상대상지 선정) ① <u>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(이하 “공동위원회”라 한다) 자문을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22조(운영지침) ①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제9조(협상대상지 선정) ① <u>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정합성, 개발의 적정성, 기대·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협상 대상지를 선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운영지침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전협상을 통한 민간개발 활성화로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, 조례 제9조(협상대상지 선정)제1항 및 제2항을 수정하여 시장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게 하거나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